
개방형 직위 안내자료

[인도지원과정]

2026. 1.



통일부

I 통일부 일반현황

1. 임 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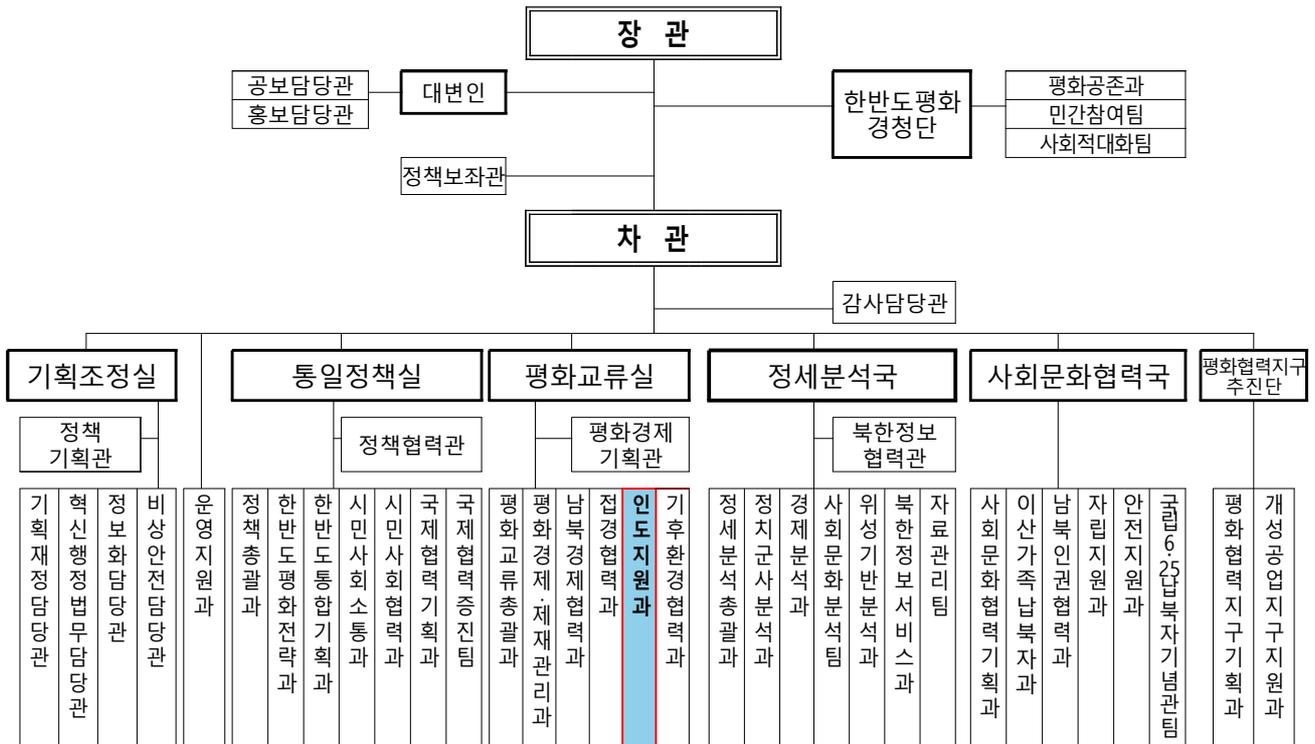
□ 정부조직법 제34조(통일부)

- “통일부장관은 통일 및 남북대화·교류·협력에 관한 정책의 수립, 통일교육, 그밖에 통일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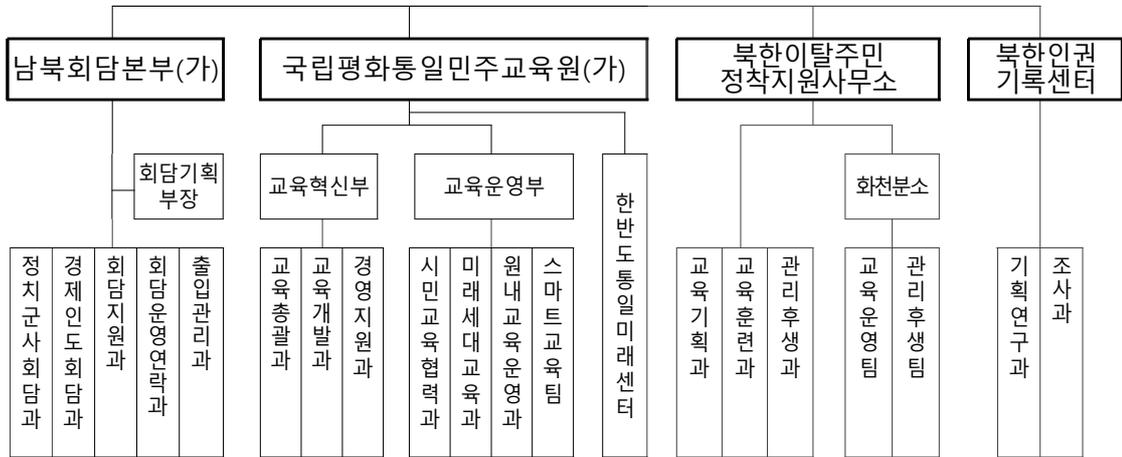
- (통일·대북정책) 한반도 평화체제 및 남북간 신뢰구축 관련 통일·대북정책 총괄·조정 및 중장기 통일정책 수립·집행
- (남북회담) 장관급 회담을 비롯하여 경제·군사 등 분야별 남북회담 총괄
- (남북교류협력) 종교·문화·체육 등 분야별 민간교류 지원 등 남북 공동성장을 위한 호혜적 교류협력 추진
- (인도적 문제 해결) 이산가족 및 납북자·역류자·국군포로 문제 해결 및 북한주민 인권의 실질적 증진을 위한 정책 추진
- (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) 북한이탈주민의 사회 적응 프로그램 강화 및 자립·자활 기반 조성, 위기가구 등 취약계층 보호, 북한이탈주민 인식개선 등
- (북한정보 수집·분석) 북한 관련 자료·정보 수집·관리·공개 및 활용, 분야별 북한정보 및 정세 분석, 평가 등
- (통일교육) 평화·통일·민주시민교육으로서의 통일교육 및 미래세대·지역사회·온라인 통일교육 활성화, 통일교육 자료 개발·보급 등
- (평화·통일 공감대 확산) 평화공존·통일담론 확산, 통일·대북정책에 대한 사회적 대화 활성화 및 국민 참여·소통, 국제협력 강화 등

2. 조직 및 정원

○ 본부 : 3실 3국(1대변인 포함) 2단 4관 33과 6팀



○ 소속기관 : 4소속기관 3부 1센터 16과 3팀



○ 정원 : 600명

□ 산하 공공기관 (기타 공공기관)

○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,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

4. 예산 및 기금(안)

(단위 : 억원)

년도	예산(일반회계)	남북협력기금
2025	1,671	7,981
2026	1,729	10,001

5. 소관 법률 등

□ 법률 : 12건

-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('90.8.1. 발효)
- 남북협력기금법('90.10.1. 발효)
-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('97.7.14. 발효)
- 통일교육 지원법('99.8.6. 발효)
-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('06.6.30. 발효)
- 거래말큰사전 남북공동편찬사업회법('07.4.27. 발효)

-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('07.8.26. 발효)
-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체결 이후 남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('07.10.28. 발효)
-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('09.9.26. 발효)
- 6.25전쟁 남북피해 진상규명 및 남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('10.9.27. 발효)
- 북한인권법('16.9.4. 발효)
-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('23.12.14. 발효)

□ 국회 동의를 거쳐 발효된 남북 합의서 : 13건

- 남북사이의 투자보장에 관한 합의서('03.8.20. 발효)
- 남북사이의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방지 합의서('03.8.20. 발효)
- 남북사이의 상사분쟁 해결절차에 관한 합의서('03.8.20. 발효)
- 남북사이의 청산결제에 관한 합의서('03.8.20. 발효)
- 개성공업지구 통신에 관한 합의서('05.8.1. 발효)
- 개성공업지구 통관에 관한 합의서('05.8.1. 발효)
- 개성공업지구 검역에 관한 합의서('05.8.1. 발효)
-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관광지구의 출입 및 체류에 관한 합의서('05.8.1. 발효)
- 남북사이 차량의 도로운행에 관한 기본합의서('05.8.1. 발효)
- 남북사이의 열차운행에 관한 기본합의서('05.8.1. 발효)
- 남북상사중재위원회 구성·운영에 관한 합의서('05.8.1. 발효)
- 남북해운합의서('05.8.1. 발효)
- 남북해운합의서 이행과 준수를 위한 부속합의서('05.8.1. 발효)

II 인도지원과장 주요업무내용

1. 일반 현황

□ 조직 및 정원

○ 인도지원과

구분	3~4급	4급	4~5급	5급	6~7급	8~9급	계
정원	-	1	1	3	1	1	7

□ 예산

사업명	2026년
·(일반회계) 북한주민 인도적 상황 개선	131백만원
·(기금) 구호지원	112,230백만원
·(기금) 민생협력지원	555,380백만원

2. 주요 내용

- 인도적 대북지원과 관련된 통합적 관리를 위한 종합계획 수립, 업무의 조정 및 사업 승인시 협조
- 인도적 대북지원에 관한 법령 및 제도의 입안 또는 기획
- 정부 차원의 인도적 대북지원사업계획의 수립·시행 및 사후관리
- 지방자치단체, 민간단체 및 국제기구의 인도적 대북지원사업에 대한 기획·조정·승인 및 지원
- 인도적 대북지원과 관련된 남북한 주민 왕래의 기획·조정·승인 및 주민 접촉신고의 수리
- 인도적 대북지원과 관련된 물자의 대북 반출·반입 승인
- 인도적 대북지원에 관한 남북 실무회담 대책의 수립
- 인도적 대북지원 사업에 대한 지도·감독·행정조사 및 조정명령
- 인도적 대북지원과 관련된 국내외 관계기관과의 협조
- 인도적 대북지원과 관련된 통계업무의 종합·조정

Ⅲ 인도지원과 당면 현안과제

□ 대북 인도적 협력 계획 수립 및 법제 정비

- 인도적 협력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법·제도 정비
- 보건의료 등 분야별 인도적 상황 개선을 위한 협력계획 수립

□ 국제기구 협력

- WFP, UNICEF, WFP 등 국제기구와 협력방안 협의
 - 북한의 인도적 상황, 국제기구 사업동향 모니터링 및 보건·영양·식수 위생 등 분야별 협력방안 지속 모색
- 여타 국제기구·INGO와의 협력방안 기획

□ 민간 차원의 인도적 활동 지원

- 교류협력법에 따라 △접촉·반출 △인도적 유엔제재면제 △협력기금 지원 등 민간 차원의 인도적 활동 지원
- 민간단체와의 협업체계 구축 및 공동활동 기획·추진

□ 국내외적 공감대 확산 및 대응 기반 유지

- 전문가·유관기관 등과 북한의 인도적 상황 평가 및 협력 준비
- 보건의료 등 분야별 전문가 네트워크 운영

끝